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5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5. 14.

발 의 자 : 윤명희 · 김정록 · 홍문표
정희수 · 이만우 · 김춘진
이한성 · 한선교 · 박인숙
장윤석 · 이인제 · 권성동
문정림 · 류지영 · 신경림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, 업무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공직자의 임명 및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증거 없는 인신 공격 등 신상털기식 도덕성 검증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,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 또한 도덕적 기준은 보는 사람의 시각과 시대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흠집내기식 인사청문회로 인하여 청문대상자의 향후 조직 장악력과 국정수행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음.

따라서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완료한 후,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

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인사청문에 앞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
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소위원회제도를 도입함(안 제4조제2제2항 신설).
- 나. 인사청문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(인사청문소위원회) ①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및 인사청문에 앞서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인사청문소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③ 인사청문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인사청문소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등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의2(인사청문소위원회) ① <u>공 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및 인사청문에 앞서 도덕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소 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인사청문소위원회는 공개하 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<u>인사청문소위원회에 관하여 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.</u></p> <p>④ <u>인사청문소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